

천안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buseong.firstvill.co.kr)와 견본주택 관람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항
 - ※ 견본주택 관람시간과 관람가능일은 당사 홈페이지(buseong.firstvill.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향후 방문 예약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방식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 ※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분양상담전화(1588-803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이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나 1순위 가점제 청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구 분	대 상(주택 소유 구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가점제 청약 제한 대상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처분조건)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2주택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7년간 적용 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16.) 현재 천안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2021.09.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의 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와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정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단,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청약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 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 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홈페이지(buseong.firstvil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 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시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신고 거부, 서류미비, 미제출한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20. 12. 18.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 기간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므로,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권한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세대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건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buseong.firstvill.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건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건본주택을 직접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해당점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1순위		2순위				
	해당지역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천안시 1년 미만 거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일정	2022.09.26.(월)	2022.09.27.(화)	2022.09.28.(수)	2022.09.29.(목)	2022.10.07.(금)	2022.10.08.(토) ~ 2022.10.13.(목)	2022.10.18.(화) ~ 2022.10.20.(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대상자 : 당첨자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사업주체 홈페이지(buseong.firstvill.co.kr) 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 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천안시 주택과 - 37747호(2022.09.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1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3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8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 (m ²)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민영 주택	2022000640	01	84.9390A	84A	84.9390	27.0692	112.0082	5.4424	46.6145	164.0651	49.0798	182	97	18	18	37	5	19	85	10
		02	84.9679B	84B	84.9679	25.9761	110.9440	5.4443	46.6304	163.0187	49.0965	76	41	7	7	17	2	8	35	4
		03	84.9913C	84C	84.9913	26.6282	111.6195	5.4459	46.6432	163.7086	49.1101	58	31	7	5	12	1	6	27	3
		합 계											316	169	32	30	66	8	33	147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없음)

약식 표기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5%)	2회(15%)	3회(15%)	4회(15%)	
									계약시	2023.01.30.	2023.04.28.	2023.07.28.	2023.11.30.	입주지정일
84A	84.9390A	101동 1호, 2호 103동 1호, 2호 104동 1호, 2호 105동 1호, 2호 106동 1호, 2호	182	1층	5	119,660,964	252,339,036	372,000,000	37,2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11,600,000
				2층	7	125,451,011	264,548,989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3층	10	129,954,380	274,045,620	404,000,000	40,4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21,200,000
				4층	10	133,171,073	280,828,927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5층~6층	20	135,101,089	284,898,911	420,000,000	4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6,000,000
				7층~14층	80	137,031,104	288,968,896	426,000,000	42,6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27,800,000
				15층~20층	50	137,996,112	291,003,888	429,000,000	42,9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84B	84.9679B	101동 3호, 4호 102동 2호, 3호	76	1층	2	112,855,305	236,144,695	349,000,000	34,90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52,350,000	104,700,000
				2층	2	118,643,586	248,256,414	366,900,000	36,690,000	55,035,000	55,035,000	55,035,000	55,035,000	110,070,000
				3층	4	123,203,070	257,796,930	381,000,000	38,10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114,300,000

				4층	4	126,436,746	264,563,254	391,000,000	39,10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117,300,000	
				5층~6층	8	128,376,952	268,623,048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7층~14층	32	130,446,505	272,953,495	403,400,000	40,34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60,510,000	121,020,000	
				15층~20층	24	131,416,608	274,983,392	406,400,000	40,64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60,960,000	121,920,000	
84C	84.9913C	101동 5호 102동 1호, 4호	58	1층	3	119,858,008	251,941,992	371,800,000	37,180,000	55,770,000	55,770,000	55,770,000	55,770,000	111,540,000	
				2층	3	125,725,183	264,274,817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3층	3	130,238,395	273,761,605	404,000,000	40,4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21,200,000
				4층	3	133,462,117	280,537,883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5층~6층	6	135,396,351	284,603,649	420,000,000	42,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26,000,000
				7층~14층	24	137,330,584	288,669,416	426,000,000	42,6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27,800,000
				15층~20층	16	138,297,701	290,702,299	429,000,000	42,9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용, 플러스옵션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플러스옵션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체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연면적 중 공동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된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84A,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공급계약서 참조)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 금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되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였거나 약정일에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판매)조건은 공급(판매)시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동·층·호별로 구분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경우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8.02.09.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 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미 협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당사 임의분양 공급 예정입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사항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거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충청남도	2	1	1	4
		대전광역시	2	1	1	4
		세종특별자치시	2	1	1	4
	국가유공자		3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1	5
	중소기업 근로자		3	1	1	5
	계		18	7	7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	7	5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37	17	12	66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5	2	1	8	
생애최초 특별공급		19	8	6	33	
합계		97	41	31	16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 본 산출결과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별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p>당첨 동호수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 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임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2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0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66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table border="1" data-bbox="257 414 2105 470">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 <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th> <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07.01. ~ 12.31.</td> <td>전년도 소득</td> <td>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선정된 자 - 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6,208,935원 ~ 7,450,721원	7,200,810원 ~ 8,640,971원	7,326,073원 ~ 8,791,286원	7,779,826원 ~ 9,335,790원	8,233,579원 ~ 9,880,294원	8,687,332원 ~ 10,424,797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208,935원 ~ 8,692,508원	7,200,810원 ~ 10,081,133원	7,326,073원 ~ 10,256,501원	7,779,826원 ~ 10,891,755원	8,233,579원 ~ 11,527,009원	8,687,332원 ~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450,722원 ~ 9,934,294원	8,640,972원 ~ 11,521,294원	8,791,287원 ~ 11,721,715원	9,335,791원 ~ 12,447,720원	9,880,295원 ~ 13,173,725원	10,424,798원 ~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 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8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3세대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table border="1" data-bbox="257 595 2107 655"> <thead> <tr> <th data-bbox="257 595 875 624">입주자모집공고일</th> <th data-bbox="875 595 1494 624">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th> <th data-bbox="1494 595 2107 624">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57 624 875 655">07.01. ~ 12.31.</td> <td data-bbox="875 624 1494 655">전년도 소득</td> <td data-bbox="1494 624 2107 655">전년도 소득</td> </tr> </tbody> </table>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p>•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p>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과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세대주 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세대주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추첨제 우선공급(무주택자 우선공급)적용 : 1순위 추첨제 공급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 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추첨제 100%)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천안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④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인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 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 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 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천안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무모부양, 생애최초		2022.09.2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건본주택 : 10:00 ~ 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건본주택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어플 - 하단 참조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2022.09.27.(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어플 - 하단 참조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천안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2022.09.28.(수) 09:00 ~ 17:30		
2순위		2022.09.29.(목) 09:00 ~ 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후 다운로드 (애플 앱 스토어 어플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주택공급신청자는 청약 전 반드시 천안시 전입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천안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 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설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설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설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0.07. (금) 확인 :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구글 앱(애플 앱) “청약Home” 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buseong.firstvill.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0.07. (금) ~ 2022.10.16.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를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0.07.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유의사항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2.10.08.(토) ~ 2022.10.13.(목) / 6일간 10:00 ~ 16:00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안내

- ※ 장애인 및 고령자(65세 이상)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 포함.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		본인(배우자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청약 당첨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 - 본인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복무기간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전매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 체류 증빙서류	○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출입국 사실 증명서		○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체류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는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당사 건본주택 비치)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기본증명서		○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소득입증서류	○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일반공급 당첨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위임장	○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본인 발급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해당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해당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주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필증,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증 기준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직인날인된 원본제출이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아래 ①~③종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VI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10.18.(화) ~ 2022.10.20.(목) 3일간, 10:00 ~ 16:00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건본주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고, 건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를 일체 수납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자 확인 불명으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1010101” 또는 “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93301 - 04 - 092250	(주)더블유건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전자수입인지	○		본인	「인지세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	청약자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통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동선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상세검토를 통해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창호 주변 진입로가 형성되거나 시설물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지반높이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전체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료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대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분양대금 외 발코니확장대금 및 플러스옵션(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유상옵션)은 중도금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 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율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지정되면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를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받은 대출이자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분양가의 총 60% 중 50% 한도내에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 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3.01.30.	입주지정일
84A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84B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84C	14,900,000	1,490,000	1,490,000	11,920,000

■ 발코니확장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발코니확장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93301 - 04 - 092247	(주)더블유건설

■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체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자 확인 불명으로 발코니확장대금 및 플러스옵션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1010101” 또는 “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발코니확장계약 및 플러스옵션계약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하며 사업주체는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 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써(추가 전용부분 제외)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됩니다.

- 전등 설치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설치 위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기관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사업 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 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냉장고장,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됩니다.

■ 플러스 옵션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에어컨 설치부위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시스템 에어컨 설치 모델명	
				계약시	2023.01.30.	입주지정일	제조사	모델명
84A	선택1(2개소)	거실 + 안방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선택2(3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또는 침실2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선택3(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X 2EA
84B	선택1(2개소)	거실 + 안방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선택2(3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또는 침실2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선택3(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X 2EA
84C	선택1(2개소)	거실 + 안방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선택2(3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또는 침실2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선택3(4개소)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삼성전자	AJ072MB1PBC1 / AJ023MB1PBC1 / AJ020MB1PBC1 X 2EA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기본 제공 2개소 (거실, 안방)에 매립형 냉매 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을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설치위치	기본형	선택형 (유상)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설치모델	
						계약시	2023.01.30.	입주지정일	제조사	모델명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주방 냉장고가구장	냉장고 상부장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삼성전자	RR40A7995AP(냉장고) RZ34A7865AP(냉동고) RQ34A7945AP(김치냉장고)
전 주택형	빌트인 전기오븐	주방가구 하부장 내	하부수납장 설치	전기오븐	300,000	30,000	30,000	240,000	삼성전자	NQ36A6555CK
전 주택형	빌트인 전기쿡탑	주방가구 하부장 내	3구가스쿡탑 (제조사:SK매직)	인덕션 3구	880,000	88,000	88,000	704,000	삼성전자	NZ63B5056AK
전 주택형	빌트인 전기쿡탑	아일랜드 주방가구	미설치	인덕션 1구	150,000	15,000	15,000	120,000	SK매직	IHR-B100
전 주택형	빌트인 식기세척기	주방가구 하부장 내	하부수납장 설치	식기세척기	900,000	90,000	90,000	720,000	삼성전자	DW60B5095UG
전 주택형	의류관리기	안방 드레스룸	미설치	3별 기준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삼성전자	DF60A8500TG
전 주택형	비데-부부욕실	부부욕실	미설치	분리형	130,000	13,000	13,000	104,000	SK매직	BID-B13D
전 주택형	비데-공용욕실	공용욕실	미설치	분리형	130,000	13,000	13,000	104,000	SK매직	BID-B13D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 수납장으로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냉장고가 돌출되거나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벽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 판매가격은 기존 가스 쿡탑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쿡탑 선택 시 기존 가스 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쿡탑은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1) 84A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기본형	선택형 (유상)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3.01.30.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현관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 중문(수동형)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현관팬트리	현관	가구도어 + 내부 도배마감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 + 내부 도배마감	700,000	70,000	70,000	560,000
복도팬트리	복도	가구도어 + 내부 도배마감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 + 내부 도배마감	500,000	50,000	50,000	400,000

침실1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도배마감)	불박이장 설치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안방 불박이장	안방	미설치(도배마감)	불박이장 설치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바닥타일 마감	거실+주방+복도	강마루	포세린 타일(600*600)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벽타일마감	거실 벽 (아트월)	포세린 지정타일(400*800)	박판타일 (1000*1200 또는 1200*1200)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주방가구	주방가구상부장	지정색상 PET 마감도어	고급형 상부장 주방도어 (상부장 유리도어)	410,000	41,000	41,000	328,000
주방특화 [주방벽 + 상판]	옵션 1 엔지니어드스톤마감 : 주방 벽+상판 (씽크볼+수전)	벽체:지정도기질타일(300*600) 상판:지정인조대리석MMA계열 기본형수전+씽크볼	주방벽 + 상판 : 지정색상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고급형(씽크볼+수전)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옵션 2 고급수입타일마감 : 주방 벽+상판 (씽크볼+수전)	벽체:지정도기질타일(300*600) 상판:지정인조대리석MMA계열 기본형수전+씽크볼	주방벽 + 상판 : 지정색상 고급수입타일 마감 고급형(씽크볼+수전)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주방 아일랜드상판	옵션 1 엔지니어드 스톤 아일랜드 상판마감	상판 : 지정 인조대리석 MMA 계열	상판 : 지정색상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550,000	55,000	55,000	440,000
	옵션 2 고급 수입타일 아일랜드 상판마감	상판 : 지정 인조대리석 MMA 계열	상판 : 지정색상 고급수입타일 마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드레스룸- 선택1 (알파룸형)	옵션1 알파룸형	미설치(도배마감)	파우더룸 + 슬라이딩 도어+ 알파룸(도배마감)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드레스룸- 선택2 (확장형)	옵션2 드레스룸 확장형	미설치(도배마감)	슬라이딩도어 + 시스템선반(벽판넬형)	2,760,000	276,000	276,000	2,208,000
드레스룸- 선택3 (드레스룸+ 알파룸형)	옵션3 드레스룸 + 알파룸형	미설치(도배마감)	시스템선반(벽판넬형) + 슬라이딩도어+ 알파룸(도배마감)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주방천장 마감	주방 천장마감	기본형 천장 (H 2300)	우물천장 + 시트알판마감	530,000	53,000	53,000	424,000
거실천장 마감	거실천장	우물천장 + 기본조명 3구	우물천장 + 간접조명 2면 + 중앙디자인조명 1구	650,000	65,000	65,000	520,000

2) 84B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기본형	선택형 (유상)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3.01.30.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현관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수동형)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현관팬트리	현관	가구도어 + 내부 도배마감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 + 내부 도배마감	750,000	75,000	75,000	600,000
복도팬트리	복도	가구도어 + 내부 도배마감	내부 시스템선반 + 내부 도배마감	500,000	50,000	50,000	400,000
침실1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도배마감)	불박이장 설치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안방 불박이장	안방	미설치(도배마감)	불박이장 설치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복도장식장	복도	지정면 도배마감 + 오픈선반장	벽면 가구판넬 마감 + 고급형 장식장	950,000	95,000	95,000	760,000
바닥타일 마감	거실+주방+복도	강마루	거실 + 복도 + 주방 : 지정 포세린 타일(600*600)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벽타일마감	거실 벽 (아트월)	포세린 지정타일(400*800)	박판타일 (1000*1200 또는 1200*1200)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주방가구	주방가구상, 하부장	지정색상 PET 마감도어 (상, 하부장)	고급형 상부장 주방도어 (상부장 유리도어)	500,000	50,000	50,000	400,000
주방특화 [주방벽 + 상판]	옵션 1 엔지니어드스톤마감 : 주방 벽+상판 (씽크볼+수전)	벽체:지정도기질타일(300*600) 상판:지정인조대리석MMA계열 기본형수전+씽크볼	주방벽 + 상판 : 지정색상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고급형(씽크볼+수전)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옵션 2 고급수입타일마감 : 주방 벽+상판 (씽크볼+수전)	벽체:지정도기질타일(300*600) 상판:지정인조대리석MMA계열 기본형수전+씽크볼	주방벽 + 상판 : 지정색상 고급수입타일 마감 고급형(씽크볼+수전)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주방 아일랜드상판	옵션 1 엔지니어드 스톤 아일랜드 상판마감	상판 : 지정 인조대리석 MMA 계열	상판 : 지정색상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550,000	55,000	55,000	440,000
	옵션 2 고급 수입타일 아일랜드 상판마감	상판 : 지정 인조대리석 MMA 계열	상판 : 지정색상 고급수입타일 마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드레스룸 (확장형)	드레스룸 확장형	미설치(도배마감)	강화유리도어 + 시스템선반(벽판넬형)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주방천장 마감	주방 천장마감	기본형 천장 (H 2300)	우물천장 + 시트알판마감	530,000	53,000	53,000	424,000
거실천장 마감	거실천장	우물천장 + 기본조명 3구	우물천장 + 간접조명 2명+ 중앙 디자인조명 1구	650,000	65,000	65,000	520,000

3) 84C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기본형	선택형 (유상)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3.01.30.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현관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수동형)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현관팬트리	현관	가구도어 + 내부 도배마감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 + 내부 도배마감	800,000	80,000	80,000	640,000
복도팬트리	복도	가구도어 + 내부 도배마감	유리도어 + 시스템선반 + 내부 도배마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침실1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도배마감)	불박이장 설치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안방 불박이장	안방	미설치(도배마감)	불박이장 설치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바닥타일 마감	거실+주방+복도	강마루	거실 + 복도 + 주방 : 포세린 타일(600*600)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벽타일마감	거실 벽 (아트월)	포세린 지정타일(400*800)	박판타일 (1000*1200 또는 1200*1200)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하부장	지정색상 PET 마감도어 (상,하부장)	고급형 상부장 주방도어 (상부장 유리도어)	450,000	45,000	45,000	360,000
주방특화 [주방벽 + 상판]	옵션 1 엔지니어드스톤마감 : 주방 벽+상판 (씽크볼+수전)	벽체:지정도기질타일(300*600) 상판:지정인조대리석MMA계열 기본형수전+씽크볼	주방벽 + 상판 : 지정색상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고급형(씽크볼+수전)	2,250,000	225,000	225,000	1,800,000
	옵션 2 고급수입타일마감 : 주방 벽+상판 (씽크볼+수전)	벽체:지정도기질타일(300*600) 상판:지정인조대리석MMA계열 기본형수전+씽크볼	주방벽 + 상판 : 지정색상 고급수입타일 마감 고급형(씽크볼+수전)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주방 아일랜드상판	옵션 1 엔지니어드 스톤 아일랜드 상판마감	상판 : 지정 인조대리석 MMA 계열	상판 : 지정색상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550,000	55,000	55,000	440,000
	옵션 2 고급 수입타일 아일랜드 상판마감	상판 : 지정 인조대리석 MMA 계열	상판 : 지정색상 고급수입타일 마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드레스룸- 선택1 (알파룸형)	옵션1 알파룸형	미설치(도배마감)	파우더룸 + 슬라이딩 도어+ 알파룸(도배마감)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드레스룸- 선택2 (확장형)	옵션2 드레스룸 확장형	미설치(도배마감)	슬라이딩도어 + 시스템선반(벽판넬형)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드레스룸- 선택3 (드레스룸+ 알파룸형)	옵션3 드레스룸 + 알파룸형	미설치(도배마감)	시스템선반(벽판넬형) + 슬라이딩도어+ 알파룸(도배마감)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주방천장 마감	주방 천장마감	기본형 천장 (H 2300)	우물천장 + 시트알판마감	530,000	53,000	53,000	424,000
거실천장 마감	거실천장	우물천장 + 기본조명 3구	우물천장 + 간접조명 2명 + 중앙디자인조명 1구	650,000	65,000	65,000	520,000

■ 유상옵션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가전 포함)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 내용,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일정과 납부 금액은 사업 주체가 지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 비내력벽은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 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옵션 미선택 시 벽체는 일반 타일(300*600), 상판은 인조대리석 (MMA) 상판이 설치되며, 기본 싱크볼 및 수전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과 기본 품목인 인조대리석은 상판 두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에만 해당 용도의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안방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바닥 (마루), 벽/천장(도배지)로 시공됩니다.
- 안방 드레스룸 옵션(알파룸형) 선택 후 의류 관리기 추가 설치시 해당 면적만큼 시스템 선반이 축소됩니다.
- 84㎡A · C 타입 안방 알파룸형 선택후 안방 불박이장 옵션 미선택시 날개벽(폭 :600내외)이 추가 설치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도어 열림 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84㎡A · B · C 타입 모두 상부장만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작동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유리 슬라이딩 도어 설치로 인해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와 온도조절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렌지(인덕션, 하이라이트 등)를 설치하여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 배관 및 밸브는 설치됩니다.
- 주방 벽, 상판 고급수입산 타일의 문양은 본 모델하우스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벽, 상판 고급수입산 타일 시공시 시공 이음부(줄눈)의 마감은 다소 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줄눈의 마감은 실리콘 마감 처리됩니다.
- 별도 계약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에 따라 일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및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하기 플러스 옵션 납부 계약으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체결 시 배포되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설치비용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플러스옵션 (계약금, 중도금, 잔금)	393301 - 04 - 092247	(주)더블유건설

■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플러스 옵션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고 에어컨 추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등 플러스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는 냉방 전용 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 매립 배관이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매립형 냉매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 배관은 거실과 안방만 해당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가동시에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폴리싱 타일 특화는 거실 + 주방 + 복도에만 적용되며 공사부위 및 위치, 디자인을 계약자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바닥 폴리싱 타일 특화 선택시 침실 바닥재(강마루)와의 경계 부위에 재료 분리대가 시공되고 마감재 두께 차이에 따른 약간의 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폴리싱 타일 간 줄눈이 오염되기 쉬우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폴리싱 타일 특화 선택시 재료적 특성에 의하여 표면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 낙상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난방 미가동시 강마루에 비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의 가격은 다양한 여건에 의해 산정된 가격으로서 타입 간 비교, 옵션별 비교 등 주관적인 사유를 근거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 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1. 바닥재	강마루 :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안방, 침실, 드레스룸 타일, 인조석 : 현관 타일 :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발코니 벽 및 천장 도장, 거실 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통합무선AP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먼처리 천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덴박스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4.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젠다이(인조석), 재료분리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5. 주방	주방TV 상, 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벽판넬,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렌지후드	설비배관, 전기, 통신, 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6.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발코니 수전류, 세탁 선반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4A	84B	84C
금 액	31,199,000	30,903,000	31,091,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 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 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약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당 사업지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행정기관의 개발사업진행에 따라 주변여건(도로, 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자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연면적 중 공동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된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사업장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대출을 받은 사업장으로 수분양자에게 대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달로그, 홍보물, 홈페이지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홍보용으로 제작된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냄새,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 신고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원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 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CG상에 표현된 주변지역의 레벨 및 공원, 조경 계획은 단순 참고 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웅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에 따라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시공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충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색상, 디자인, 재질,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아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층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이동통신 중계기가 101동, 104동의 옥탑층 및 지하층에 설치되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냄새,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등)및 부대복리시설(관리소, 주민회의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각 실의 위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입주중발급처, A/S센터로 운영한 후 향후 입주민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와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못하고, 이를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출입 차단기 개방 전 6면을 사용하여 점포별 면적분할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지하주차장 천창)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 주, 천창, DRY AREA, 쓰레기분리수거장, 조명페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형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종과 관련하여 인종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세대로 사용되는 세대의 마감자재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재시공할 예정으로서, 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항임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시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적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개인, 외국법인/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이 국내 부동산 등(토지, 건축물,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제도상 공식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모임, 동호회 등)를 구성하여(또는 개인이) 설계 변경 등 공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단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내 세탁기, 건조기 설치 위치는 보유하고 계신 제품에 따라 반입 또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발코니 사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외부여건

-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 과정 중 지구계획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등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국가기관, 행정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철도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분진, 이물질유입, 전자파, 전자기장에 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발생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측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인근 대중교통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담당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감압시설 및 한전 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내외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초등학교는 천안부대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고, 중학생은 천안1학군에 배치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천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학교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 및 각종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왕복 2차로로 시공되며, 진입로의 출입구는 높이 2.7M로 시공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후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옥탑층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이동통신 중계기가 101동, 104동 옥탑층 및 지하층에 설치되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공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 및 난간대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저층 세대는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모형, 도면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철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트렌치와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각종 구조물등(지붕구조물 및 벽체 구조물 포함)에 의해서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의 바닥레벨은 공사중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조경 및 토목계획(식재, 옹벽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외부벽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은 관련규예에 의한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회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내·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구에 위치한 101동, 102동, 106동의 저층부세대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열판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로 인한 생산전기는 단지내 공용부위의 운용에 사용됩니다.
- 분리수거장 위치는 추후 현장 시공 여건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 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등이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의 가구류,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의한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증,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상부 측벽 등에 조명형 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옥탑상부에 경관 조명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세대내부에 개별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건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반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홍통은 발코니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가변형벽체는 건식고정 벽체이며 이에 따라 중량물 취부가 제한됩니다.
7.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2.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상하부,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3.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4.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본 공사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7.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8.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9.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와 접한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벽지,타일,바닥재 등)는 설치되지 않으며 시공 상 필요에 의해 일부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20. 실외기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릴창을 통해 우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21. 각 타입별 실외기실 크기가 상이하며 실외기 장비 크기가 일반 시중 가정용 제품보다 클 경우 설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22. 세대 천정형 에어컨 옵션을 신청한 세대는 거실 스텐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별도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23. 세탁 공간 및 실외기실에는 외부에 별도의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천장에 환기 장비가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4. 세대내 침실의 경우 콘센트 2개소 및 통신, TV용 수구 1개소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개수등은 여건에 따라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 주방 냉장고 설치 위치에 급수 및 배수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26.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입상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세대 화장실, 발코니 단차(레벨)은 구배시공에 따라 건본주택, 착공도서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슬리퍼가 욕실문 하부에 걸릴 수 있습니다.
28. 가구, 목창호, 인테리어 패널 등 마감 시공 시 건본주택과는 달리 내구성을 위해 실타카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9. 건본주택에서 코킹 (미)시공된 부위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 건본주택에서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 가구류는 시공회사에서 임의 선정한 업체에서 주문 제작하여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입찰과정을 거쳐 선정된 업체가 시공하게 됩니다.
31.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 가구류 일부에는 추후 통풍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2. 욕실, 침실, 다용도실 출입문은 목재 문짝 또는 ABS 문짝으로 시공되며 ABS 문짝의 경우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 하부 마구리면(양쪽 직각면)을 별도 마감하지 않습니다.
33. 일반가구/주방가구 중 길이가 긴 문짝의 경우 휨 방지를 위해 문짝 뒷판에 철물 보강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34. 주방 천장에 가스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5. 통행 및 청소 등 편의를 위해 침실 출입문 하부 문틀은 설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주방·타일 폴리싱타일 선택 세대의 경우 강마루와의 경계 부위에 재료 분리대가 설치됩니다.)
36.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의 주요 실은 환기창 및 채광창이 외기에 면해 있으나, 주동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7. 세대 내 주방 후드를 외벽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8. 모든 주택형은 대피공간이 없고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됩니다.
39. 본 현장은 특화계획에 따라 외부창호와 난간대가 배색이 아닌 유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0. 관련법령에 따라 세대 통신 통합 단자함 및 세대 분전함은 침실 내부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 표기 될 수 있습니다.)
4. 발코니(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동일 타입의 세대이더라도, 세대가 위치한 동과 라인에 따라 안목치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할로겐 조명 등은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환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경우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저층부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합니다.

■ 주변환경

1.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 과정 중 지구계획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등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학교 건립 주체는 충청남도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학교 배치 시 인접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3월 예정** (향후 일정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본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 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의 단지는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 (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체에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 경비실(1), 경로당(1), 어린이놀이터(1), 어린이집(1),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1), GX룸(1), 샤워실/라커/파우더(2)],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2BL공동주택
건축주	(주)블유건설 / (주)다림 씨앤씨
준공(예정)일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6-6일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20층 / 316세대
면적	51,993.7321 m 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이안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2-0877-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2.8.4.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2년 8월 4일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20240330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6-6일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51993.7321(m ²)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이안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 번호	22-주-에-1+-0168
평가자	신화석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증 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² ·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 ² ·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79.8	에너지 효율 높음	1+	CO ₂ 배출 적음	28.5
에너지 고소비량 건축설계		에너지 효율 낮음		CO ₂ 배출 많음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 ²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7.5	72.7	56.0	15.1
급탕	30.7	36.2	26.8	7.4
조명	11.6	10.5	29.0	4.9
환기		2.3	6.4	1.1
합계	79.8	121.7	118.2	28.5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

2022년 06월 23일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1,096,392,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 기	(주)신일이앤씨	430,707,718	
소방 · 통신	(주)갑인엔지니어링	220,0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91,983,920,000원	제07812022-101-00010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계속사업·계속사업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중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로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을”)은 사업주체(“갑”)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갑”)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주식회사 더블유건설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88, 509호(영천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259-14, 1층(고매동)
	등록번호	134811-0254194	110111-0177471
시공회사	상 호	주식회사 우남건설	주식회사 더블유건설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제2층(영천동, 더퍼스트타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88, 509호(영천동)
	등록번호	214911-0004756	134811-0254194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 하우스 : buseong.firstvill.co.kr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 부성지구 우남퍼스트빌 견본주택 / 분양문의 1588-803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